

휴일 대체 동의서

2020년 근무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여가시간 증대 및 병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정된 임시 공휴일에 정상근로하고 근로자가 정한 근무일에 휴일을 대체하여 사용함을 합의한다.

- 아 래 -

1. 적용 대상 : 전 직원(임산부 제외)
2. 대체근무일 : 2020년 8월 17일(월)

※ 대체근무 및 대체휴일에 따른 추가비용발생은 없음.

2020년 8월 10일

(사용자)

목포시의료원장 이 원 구 (인)



(근로자 대표)

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
목포시의료원 노동조합지부장 서 순 영(인)

